

노 후 자 동 차 교 체 감 면 신 청 서

[] 사전 폐차 또는 수출
[] 사후 폐차 또는 수출

※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관리번호			처리기간			즉시		
신청인								
①성명(법인명)			②주민(사업자)등록번호					
③주소(사업장 소재지)			④연락처					
노후자동차				신차(감면 신청차량)				
⑤차대번호			⑩차대번호					
⑥자동차등록번호			⑪자동차등록번호					
⑦최초등록일			⑫최초등록일					
⑧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 여부			⑬산출세액	감면 전	감면 후	감면액		
			개별소비세					
			교육세					
			부가가치세					
⑨말소 등록일			⑭반출신고		사업자(하치장)번호			
					반출지(하치장)상호			
첨부서류	1. 자동차등록원부 1부 (노후자동차, 신차 각 1부) 2. 주민등록증(사업자등록증) 사본 * 주민등록증 사본은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으로 대체가능						수수료 없음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1조에 따라 노후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며, 위 기재사항이 거짓인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(개별소비세액, 교육세액, 부가가치세액) 및 가산세를 즉시 납부하겠습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회사 귀하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1조에 따라 위 기재사항과 관련된 첨부서류를 원본과 대조하고 감면 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한 이후 기재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, 위 감면신청서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회사 (인)

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귀하

작성방법

1.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 및 등록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.
2. ⑥자동차등록번호는 말소등록 전의 번호를 적습니다.
3. ⑧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유하고 있으면 "Y"라고 적습니다.
4. ⑬산출세액 중 '감면전' 란은 노후자동차교체 세금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.
5.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노후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.